

일용근로자 가입 안내 주기 변경 및 가입기준 개선 안내

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평소 국민연금 업무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
국민연금은 일용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위해 국세청 등 관계기관 자료를 활용하여 해당 사업장에 가입 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
소득세법 제164조(지급명세서 제출) 개정으로 **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주기가 월로 단축됨**에 따라, 국민연금 일용근로자 가입 안내도 분기에서 월 단위로 변경되어 **앞으로는 매월 가입대상자를 안내드릴 예정입니다.**

아울러 2025년 7월 1일부터 변경된 일용근로자 가입기준 사항을 함께 안내드리오니 신고 업무에 참고 하시고, 적기에 사전 가입신고 바랍니다.

| 주요 안내사항 |

1. 국세청 일용근로자 가입 안내 주기 변경 (분기 → 월)

앞으로는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을 보다 신속하게 확인하여 매월 국민연금 가입 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.

현 행(분기)		변 경(월)	
근로 자료	가입 안내 시기	근로 자료	가입 안내 시기(예정)
2025년 3분기(7~9월)	2026년 1월	2025년 3분기(7~9월)	2026년 1월
2025년 4분기(10~12월)	2026년 3월	2025년 4분기(10~12월)	2026년 3월
2026년 1분기(1~3월)	2026년 6월	2026년 1~2월	2026년 5월
		2026년 3~4월	2026년 6월
2026년 2분기(4~6월)	2026년 9월	2026년 5월	2026년 7월
		2026년 6월	2026년 8월
		2026년 7월	2026년 9월
		2026년 8월	2026년 10월
		2026년 9월	2026년 11월

2.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기준 개선 (2025.7.1. 시행)

◎ “1개월 판단” 정의 변경(월 단위 기준으로 변경)

기존	개선
근로시작일부터 1개월 계산	매월 말일 기준 월 8일(또는 소득 220만 원)이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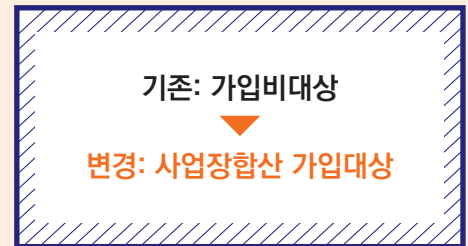
※ 다만 1개월만 있는 경우라도 초일과 말일을 포함하는 경우 1개월 이상에 해당

◎ “건설 일용근로자 현장별 적용기준 개선”

기존	개선
건설 현장별 8일 미만 시 가입대상에서 제외	건설 현장별 8일 미만 제외 시 사업장 단위로 합산하여 8일 이상이면 가입대상

- ◆ **사례** (기존) 3개월 동안 각 건설공사 현장별 3일 근로로 가입 대상에서 제외
(변경) 사업장 기준 합산 근로일수 월 8일(또는 합산 소득 220만 원)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

구 분		7월	8월	9월
○○건설(주)	계	9	9	9
	A공사현장	3	3	3
	B공사현장	3	3	3
	C공사현장	3	3	3



근로기간: A현장 7.1. ~ 9.5., B현장 7.2. ~ 9.20., C현장 7.20. ~ 9.22.
→ 사업장(건설일용관리) 또는 본점으로 가입, 취득일 7.1. 상실일 10.1.

3. 국민연금 EDI 내 일용근로자 가입 대상 여부 판단 화면

- ▶ 국민연금 웹EDI 메인화면 > 일용가입대상판단(우측)
 - ▶ 국민연금 웹EDI > 로그인 > 신고신청 > 4대공통·건설일용 신고 > 사업장(직장)가입자 자격취득신고 > 건설·일반 일용판단
- 국민연금 EDI: <https://edi.nps.or.kr>

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은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.

2026년 5월부터 매월 일용근로자 가입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오니, 사업장에서는 적기에 가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고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자세한 사항은 업무 매뉴얼*을 참고하시기 바라며, 문의 사항은 ‘국번없이 1355’ 또는 가까운 지사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
* 경로: 국민연금 홈페이지 -연금정보 - 자료실 - 기타자료

■ 2026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단계적으로 변경됩니다 (매년 0.5%p씩 상승)

연도	2025	2026	2027	2028	2029	2030	2031	2032	2033
보험료율	9%	9.5%	10%	10.5%	11%	11.5%	12%	12.5%	13%